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19가단5115832(본소), 2020가단5216144(반소) 판결
[공사대금 · 하자보수비 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미숙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건우, 사해정, 이종창, 최종모, 황방모

변론 종결 2020. 9. 22.

판결 선고 2020. 10. 2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64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6.부터 2020. 10.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7/2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0,444,3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2,185,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6.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30. 피고로부터 화성시 C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8. 7. 30.부터 2018. 11. 1.까지, 공사대금 19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2. 11. 당시까지의 이 사건 공사의 잔금을 53,000,000원으로 정산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28.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9,15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9. 2. 11.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이 이뤄졌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정산금 중 미지급금 43,850,000원(= 53,000,000원 - 9,1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를 초과하여 총 43,897,460원을 구하나 위에 서 인정한 43,8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 이유 없다).

3. 피고의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체상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체상금 42,768,00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3, 10,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지체상금율 :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3(단, 30일이 지연된 시점부터 1일을 시작한다)'고 정한 사실, 이 사건공사가 공사기간 만료일인 2018. 11. 1.부터 102일이 경과된 2019. 2. 11. 완료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을 제3, 10,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사완료가 지연된 것은 원고의 인부들에 대한 대금지급의 지연, 원고 측 직원의 부상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 는바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임이 인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다(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액 42,768,000원[= 198,000,000원 × 3/1000 × (102일 - 3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기산점을 지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 정하는 규정을 정해둔 점 등을 감안하면, 달리 지체상금을 감액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 지 않는다. 결국 피고의 지체상금 공제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 정한 금액이 지체상금까지 모두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 정한 금액이 지체상금까지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이 사건 정산합의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뤄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 정한 금액에 지체상금까지 모두 포함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직접시공비, 전기료, 농기구 파손 보상비, 수도 반출 부위 시공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는 피고가 직접시공비, 전기료, 공사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농기구 파손으로 인한 보상비, 원고가 마무리 하지 않은 수도 반출 부위 마무리 공사비 등을 지출했으므로 이를 합한

1,081,46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공제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채권은 공제 후 1,082,000원(= 43,850,000원 -42,768,000원)이 남는다.

4. 피고의 상계항변 및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있고 그 보수비가 12,185,000원이므로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정산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면서, 반소로서 이를 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에 지붕후레싱, 물받이 선홈통, 2층 발코니 누수, 주방천정 누수의 하자가 있고, 그 하자보수비로 원고가 지붕후레싱, 물받이 선홈통 보수에 3,575,000원, 2층 발코니 누수, 주방천정 보수에 7,150,000원 등 총 10,725,000원이 든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는 나아가 원고의 공사로 인한 하자보수비로, 정화조 인근 붕괴 보수비로 300,000원을, 인근 주민 마당, 진입로의 복구비로 1,160,000원이 들었으므로 이 금액상당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정화조 인근이 붕괴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인근 주민의 마당, 진입로의 복구가 원고가 수행해야할 공사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피고의 정산금채권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0. 1. 13.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정산금채권과 피고의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상계적상시로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결국 원고의 정산금 채권은 전액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바. 또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9,643,000원(=10,725,000원 - 1,082,000원)이 남게 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9,643,000원과 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8. 6.부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유정훈